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

(경유)

제목 민원회신(자배법시행령 별표1 상해등급의 11급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)

안녕하십니까

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,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민원요지>

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 [별표1]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

<회신내용>

- 우리부에서는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」 [별표1] 1.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"상해등급 11급 뇌진탕"에 대하여 관계기관(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 의사협회, 국립교통재활병원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)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30분 이내의 의식소실,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,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,
 - 또는,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(, 044-201-4762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직원 시설사무관 전결 2024. 1. 12.

협조자

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-337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,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 / <http://www.molit.go.kr>
협팀

전화번호 044-201-4762 팩스번호 044-201-5587 / ohhyejin@molit.go.kr / 비공개(6)